새정부 가계대출 관리방향 및 단계적 규제 정상화방안

- 새정부 경제정책방향 申 주거사다리 지원방안 등 대출규제 개선자료 -

2022. 6.

금 융 위 원 회

새정부 가계부채 관리 방향

I. 가계부채 증가세의 안정적 관리

- □ 코로나19 대응과정에서 **큰 폭으로 확대된 가계부채**가 우리 경제·금융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**증가세**를 **안정적으로 관리**
 - "**갚을 수 있는 만큼 빌리고**(DSR) 나누어 **갚는**(분할상환) **관행**"의 안착*을 통해 소득수준을 넘는 **과도한** 가계부채 확대를 방지
 - * 7.1일부터 차주단위DSR 3단계(총대출액 1억원 초과시 적용) 시행¹¹

Ⅱ. 부동산 대출규제의 단계적 정상화

- □ 가계부채 관리 강화 과정에서 야기된 실수요자의 '내집마련' 관련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LTV 규제를 단계적으로 정상화
 - 우선, 생애최초 주택구매자에 대한 LTV 상한을 80%로 완화^②
 - * 지역·주택가격 상관없이 LTV를 80%로 완화, 대출한도는 우선 4→6억원으로 확대 ** 현재 생애최초 LTV 우대시 적용되는 소득요건(부부합산소득 1억원) 미적용
 - 1주택자·다주택자에 대한 LTV 정상화는 상환능력 심사 (DSR) 안착, 가계부채·부동산 시장 상황 등을 보아가며 추진
- □ LTV 정상화와 연계하여, DSR로 대출이 제약되지 않도록 보완
 - DSR 산출시 청년층 장래소득 인정 확대^③(20대 +51.6%, 30대 +17.7%)
 - DSR 3단계 시행에 맞춰 **생계자금** 관련 **대출규제를 개선**^④
 - * 연소득 범위 내 신용대출 제한 폐지 등

Ⅲ. 금리상승기 취약차주 보호

- □ 금리상승기 취약차주 부실 가능성에 대비하여 상환부담 완화
 - **장기·고정금리 대환프로그램 안심전환대출**^{5.**}(20+20조원) 공급
 * '22년도 2차 추가경정예산안('22.5.12일)
 - **초장기(50년) 정책모기지* 도입, 체증식 상환**방식 활성화^⑥
 - *「긴급 민생안정 10대 프로젝트」('22.5.30일, 제1차 경제관계장관회의)

│ 차주단위DSR 규제 확대시행 내용

- ◇ DSR(Debt Service Ratio) = 연간 "총부채" 원리금 상환액/연소득
- □ (개요) 규제대상 차주의 DSR 비율이 규제비율(은행 40%, 비은행 50%) 이내인 범위에서 신규대출 취급 가능

< 차주단위 DSR 단계적 확대도입 계획 >

	도입('19.12)	1단계('21.7)	2단계('22.1)	3단계('22.7)	
주담대	투기·투기과열 9억원 초과 주택	①全 규제지역 6억원 초과 주택	총 대출액 2억원 초과	총 대출액 1억원 초과	
신용대출	연소득 8천초과 & 1억원 초과 ('20.12)	②1억원 초과	(①/② 유지)	(①/② 폐지)	

- □ (DSR 제외대상) 서민·취약계층 보호 등을 위해 일부 대출은 DSR 산정시 제외
 - ※ (참고) DSR 산정시 제외대상 대출항목 *밑줄 : 개선과제
 - ① (주거관련) 전세대출, 보금자리론 등 정책모기지, 이주비·중도금대출
 - ② (생계관련) 서민금융상품, 3백만원 이하 소액신용대출(유가증권담보 대출 포함), 주택연금(역모기지론), 상용차금융, 할부·리스 및 단기카드대출
 - ③ (기타 정책자금) 정책적 목적에 따라 정부·공공기관·지자체 등과 협약을 체결하여 취급하는 대출, 자연재해 지역에 대한 지원 등 정부정책 등에 따라 긴급하게 취급하는 대출
 - ④ <u>긴급 생계자금으로서 여신심사위원회 숭인을 받은 주택담보대출</u>
 * 대출한도 : (현행) 1억원 → (개선예시) 1.5억원 ※ <u>④</u>번과제 참고
 - ⑤ (그외) 보험계약대출, 예·적금담보대출

2

1. 완화 방안

- □ 생애최초 주택구매자에 대해서는 주택 소재지역·주택가격과 관계없이 LTV 상한 80% 적용
 - * 원활한 LTV 80% 대출을 위해 모기지보험(차주의 주담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대출기관의 손실을 보상하는 보험상품) 활성화 유도
 - 총 대출한도는 6억원*(기존 : 4억원)으로 제한 → 추후 가계부채
 ·부동산 시장 상황 등을 감안하여 확대 검토
 - * '21년말 기준 수도권 APT 중위가격 7.7억원 → LTV 80% 적용시 6.2억원
- ※ 생애최초 이외의 무주택자*에 대해서는 현행 무주택 대상 서민 ·실수요자 LTV 우대제도** 적용
 - * 과거 주택을 구매하였으나, 현재 매도하여 무주택인 가구
 - ** 부부합산소득 0.9억원·주택가격 9억원 이하 → LTV 50~60%, 대출한도 4억원(투기지역)

생애최초 주택구매자 LTV 80% 제도개선 전후 비교

	현행	개선			
요건	생애최초 + 생초 外 무주택 (연령제한x)	생애최초 (연령제한x)	생초 外 (연령제한x)		
주택가격	9억원[투기·투기과열] 이하 8억원[조정대상지역] 이하	제한없음	현행유지		
소득 (부부합산)	1억원(생초) 미만 0.9억원(일반 무주택자) 이하	제한없음	0.9억원		
LTV	60%(~6억원)·50%(6~9억원)[투기·투기과열] 70%(~5억원)·60%(5~8억원)[조정대상지역] 70%[기타지역]	80%	현행유지		
DTI	60% 이하	현행유지	현행유지		
DSR	40%[총대출 1억원 초과시, 2금융권 50%] 이하	현행유지	현행유지		
대출한도	4억원	6억원	4억원		

2. 추진일정 : 은행업감독규정 등 개정 및 시행('22.3분기)

DSR 산정시 청년층 장래소득 반영 확대

1. 추진배경

3

- □ 장래소득 증가 가능성은 높으나 **현재 소득**으로 **DSR 산정시 상환능력이 과소평가**되는 **청년충** 등에 대한 **DSR** 개선
 - * 현재 DSR 산정시 금융권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에서 "장래소득 인정기준"을 마련

2. 추진내용

- □ 생애주기에 걸친 **상환능력을 보다 실질적**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旣 마련된 금융권 **가이드라인**('21.7월~) 개선(금융권 협의)
- ① 실질적인 소득흐름을 반영하도록 통계청 "고용노동통계"상 연령별 소득 자료를 기초로 장래소득의 계산방식*을 개선
 - * (現 대출시와 만기시점간 평균 \rightarrow (改) 대출시 \sim 만기시점까지의 각 연령대별 소득흐름의 평균
- ② 장래소득 산출시 차주가 유리한 만기를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
 - * (현행) 만기를 최대 20년으로 제한 → (개선) 장래소득 산정시 ①20년(현행 최대 만기) 또는 ②실제만기(예:30년) 중 차주에게 유리한 방안을 선택하여 활용 가능

실제만기	미래소득 산정시 적용만기			
글세 단기	현행	개선		
10년 미만	장래소득	활용 불가		
10~20년	실제만기 적용	실제만기 or 차주에게 유리한		
20~40년	만기 20년으로 제한	만기(20년 등) 적용 가능		

☞ 장래소득 증가 가능성이 높은 연령층의 대출한도 확대*

* 현행 20대 초반 38.1%, 30대 초반 12.0%에서 20대 초반 51.6% 30대 초반17.7%로 확대

<u>< 대출한도 확대 사례 ></u>

◇ (사례1) 월 급여가 300만원인 만 30세 무주택 근로자

(연리 3.5%, DSR 40%, 30년만기, <u>예상소득증가율 +17.7%</u>)

- 현재소득 : 연 3,600만원 / <u>장래소득 : 4,237만원(= 3,600 × (1+0.177))</u>※만기 20년 적용
- 대출한도 : 2억 6,723만원 → **최대 3억 1,452만원 (+17.7%)**

◇ (사례2) 월 급여가 250만원인 만 24세 무주택 근로자

(연리 3.5%, DSR 40%, 30년만기, 예상소득증가율 +51.6%)

- 현재소득 : 연 3,000만원 / <u>장래소득 : 4,548만원(= 3,000 × (1+0.516))</u>
- 대출한도 : 2억 2,269만원 → **최대 3억 3,760만원 (+51.6%)**

3. 추진일정 : 금융권 모범규준 개정 및 시행(22.3분기)

4 생계자금 관련 대출규제 개선

1. 추진배경

□ 차주단위**DSR 확대시행**에 따라(3단계, '22.7월~) 실수요자의 **자금 제약**이 과도해지지 않도록 **생계자금** 관련 대출 규제를 일부 보완

2. 추진내용

- ① 신용대출 연소득 범위 내 제한 폐지
 - (현행) 신용대출 한도를 연소득 범위 내로 제한(행정지도)
 - (개선) 신용대출 한도 연소득 범위 내 제한을 폐지하고, 소득 수준을 넘는 과도한 대출은 차주단위DSR로 일원화하여 관리

※ 신용대출 연소득범위 내 제한 폐지에 따른 대출한도 변경 예시

- * 가정 : 대출금리 5%, 대출기간 5년, 소득 1억원
 - ① 현행(연소득 범위 내): 대출한도 1억원(DSR 25% 수준)
 - ② 개선(DSR 40% 적용시): 대출한도 1.6억원(연소득의 1.6배 수준)

② DSR 적용 배제가 가능한 긴급생계용도 대출 확대

- (현행) 긴급생계용도 주담대의 경우, 개별 대출기관의 여신 심사위 승인 하에 1억원 한도로 DSR 적용 배제 가능
 - * 긴급한 생활안정자금 목적임을 입증하고 여신심사위원회 승인을 받은 경우 1억원 한도 내에서 DSR을 초과하여 대출 취급 가능
- (개선예시) DSR이 배제되는 긴급생계용도 주담대 한도를
 1억원에서 1.5억원으로 확대
 - ※ 이와 함께, DSR 확대 운영과정에서 차주의 과도한 자금제약이 발생하지 않도록 긴요한 생계자금 등에 대해서는 금융권과 협의하여 추가완화 검토
- □ □, ② 제도개선시 금융회사 스스로 차주의 상환능력을 철저히 심사하고, 적합성 원칙을 준수하여 대출을 취급할 필요

3. 추진일정 : ¹⁷.1일 시행, ²은행업감독규정 등 개정 및 시행(²22.3분기)

1. 추진배경

□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차주를 대상으로 **원금·이자상환** 부담 경감 지원 및 향후 추가적인 금리상승 위험 제거

2. 추진내용

- □ 주택금융공사의 MBS 유동화를 통해 변동금리 주담대를 장기· 고정금리 정책모기지로 대환하고 추가 금리인하 제공
 - '22년 20조원, '23년 최대 20조원 규모로 공급
 - ※ 우선 '22년중 20조원(우대형 대상) 실시 후, 금리추이·시장수요·예산상황 등을 감안하여 '23년 최대 20조원 추가 시행 검토
- □ 2022년 시행 예정 안심전환대출 지원대상(우대형)
 - 대상 : 제1·2금융권 변동금리(혼합형* 포함) 주택담보대출
 - * 일정기간 후, 변동금리 전환(예: 30년 만기시 5년간 고정금리 → 이후 변동금리)
 - **주택가격** : **시가 4억원 이하** (→ 저가순 순차 신청·지원대상 선정)
 - 소득 : 부부합산 7천만원 이하
 - 대출한도 : 최대 2.5억원
 - 금리 : 시행시점 보금자리론 금리* 대비 최대 30bp 인하 고정금리 * '22.6월 기준, 4.35~4.60%

3. 추진일정(안): 9월중 접수 개시 예정

※ 주택금융공사·6개(국민·기업·농협·신한·우리·하나) 시중은행(접수·심사 참여) 내규 개정 및 협약 체결, 전산서비스 구축 등(6~8월)

주택금융공사 정책모기지 제도 개선

1. 추진내용

- ① 생애최초 주택구매자에 대해서는 주택 소재지역·아파트 여부와 관계없이 LTV를 80% 적용 (현행 55~70%)
 - * 원활한 LTV 80% 대출을 위해 모기지보증(주신보기금, 신규도입) 활용 예정 ※ LTV 80% 완화에 맞추어, 생초 대상에 한정하여 보금자리론 이용요건 조정 병행

2 50년 만기 모기지 도입을 통한 대출 한도 확대

- 보금자리론·적격대출 최장 만기를 현행 40년에서 **50년으로 확대**
 - * 50년 만기 정책모기지 이용대상 : 만 34세 이하 또는 7년 이내 신혼부부

※ 최장 만기 확대(40년 → 50년)로 인한 효과

- * **가정** : 부부소득 **연 3천만원**, 보금자리론 **DTI 60%** 적용, **신용대출 5천만원** (금리 4.25% 가정) 이용 중이며, **40년 만기** 보금자리론을 통해 **3억원 대출** 받으려는 신혼부부 가정 ('21.6월 40년 만기 보금자리론 금리 4.6%)
- ☞ 50년 만기 선택시 40년 만기 이용 대비 원리금 상환부담은 월 9만원 경감 되고, 최대 대출가능금액은 2,000만원 증가

구분	40 년 만기(A)	50년 만기 (B)	차이 (B-A)
월 상환부담	137만원	128만원	△9만원
최대 대출한도	2억 9,000만원	3억 1,000만원	2,000만원

③ 체증식 상환방식* 도입 확대를 통한 청년층 상환부담 완화

- * 대출 초기에는 상환하는 원금이 적고(이자 비중이 큼), 시간이 지날수록 서서히 상환하는 원금 규모가 커지는 방식으로 매월 원리금 증가(만 39세 이하 가능)
- 청년·신혼부부 대상 40년 만기 보금자리론에도 체증식 상환 방식을 도입하여 소득이 적은 대출초기 상환부담 완화

4 조기상환수수료율 인하를 통한 이용부담 완화

 ○ 보금자리론·적격대출의 조기상환수수료를 현행 1.2%(3년 슬라이딩 방식) → 0.9%(3년 슬라이딩 방식)으로 △25% 인하

2. 추진일정(안)

□ ('22.7월) 조기상환수수료율 인하 및 체증식 상환방식 확대
 □ ('22.8월) 50년 만기 도입
 □ ('22.11월) 정책모기지 생애최초 LTV 80% 적용

[추진배경]

- 1. 금번 규제 정상화에도 가계부채 건전성에 문제가 없는지?
- □ 정부는 가계부채 연착륙을 위한 노력을 지속할 계획
 - 특히, 금리상승이 진행중인 상황에서 차주의 부담과 금융회사의 리스크가 커질 수 있는 만큼, 가계부채 안정화 노력이 더욱 중요
- □ 금번 방안은 **가계대출 건전성**을 위한 **기본원칙을 유지**하는 범위 내에서, 긴박하게 도입된 **과도한 규제를 점진적으로 정상화**하는 과정
 - 그간 엄격한 대출관리 과정에서 **청년 등의 주거사다리**가 상대적 으로 **과도하게 제약**되었던 만큼, 생초 LTV를 우선 완화
 - **1주택·다주택자**는 부동산시장 상황, 상환능력심사 대출관행 (DSR) 여건을 고려하여 **추후 정상화 추진**
- □ 금번 개선은 **차주와 대출기관이 스스로의 판단과 책임하에** 주택매입·대출에 대해 합리적으로 의사결정을 하는 등 **시장기능이** 정상화되도록 대출 관련 제도적 제약을 해소하는 조치
 - 금융회사는 자체 리스크관리 기준에 따라 **상환능력을 철저히** 심사하고, **적합성 원칙을 준수**하면서 대출을 취급할 필요
 - **차주**도 상환능력과 주택가격 전망을 기초로, 과도한 차익추구가 아닌 **안정적 주거**를 목적으로 **대출 관련 의사결정**을 할 필요

[생애최초 LTV 완화]

2. "생애최초 주택구매자"의 범위는?

- □ 생애최초 주택구매자는 세대* 구성원 모두가 과거에 주택**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자를 의미
 - * "세대"의 정의(은행업감독규정 <별표6> 제2호 거목): 세대주 및 세대원으로 구성, 세대원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배우자, 직계존속(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), 직계비속 및 그 배우자를 말하며, 세대분리된 배우자 및 그 배우자와 동일세대를 이루고 있는 직계비속 및 그 배우자를 포함
 - ** "주택"의 정의(은행업감독규정 <별표6> 제2호 나목): 「주택법」제2조제1호에서 정하는 주택을 말하며, 분양권 및 재건축·재개발 지분(조합원 입주권) 등을 포함
- □ **과거 주택을 소유**하였다가 처분하여 현재 **무주택자**인 경우, 생애최초 주택구매자가 아니므로 금번 LTV 완화 대상이 아님
 - 다만, 현행 무주택자 대상 **서민·실수요자 LTV 우대** 활용 가능 생애최초 주택구매자 제도개선 전후 비교

	현행	개선	
요건	생애최초 + 생초 外 무주택 (연령제한x)	생애최초 (연령제한x)	
주택가격	9억원[투기·투기과열] 이하 8억원[조정대상지역] 이하	제한없음	현행유지
소득 (부부합산)	1억원(생초) 미만 0.9억원(일반 무주택자) 이하	제한없음	0.9억원
LTV	60%(~6억원)·50%(6~9억원)[투기·투기과열] 70%(~5억원)·60%(5~8억원)[조정대상지역] 70%[기타지역]	80%	현행유지
DTI	60% 이하	현행유지	현행유지
DSR	40%[총대출 1억원 초과시, 2금융권 50%] 이하	현행유지	현행유지
대출한도	4억원	6억원	4억원

3. 생애최초 LTV 80%은 언제부터 적용되는 것인지?

- □ 생애최초 LTV 80% 적용 등 금번 대출규제 정상화 방안은 은행 등 5개 금융업권 **감독규정 개정을 거쳐 시행**
- □ 새로운 규정은 원칙적으로 시행일('22.3분기) 이후 **신규대출 신청분** 부터 적용되나, **차주 보호**를 위한 **일부 예외**가 존재
 - LTV 80%(완화된 규제)의 경우, 규제시행일 이전 대출을 신청 하였으나 아직 실행되지 않은 대출도 LTV 80% 적용 가능
 - 예를 들어 7월중 대출을 처음 신청하였으나, 규제시행일 이후 대출이 실행(대출 입금)되는 경우, 완화된 규제인 LTV 80% 적용
- □ 한편, 개정 규정 시행 이전에 소유한 분양권을 바탕으로 시행일 이후 잔금대출을 받는 경우에는 생애최초 주택구매로 간주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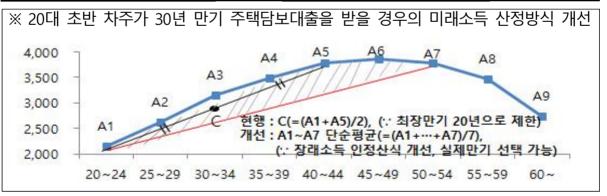
- 4. 금번 개선에 따라 금융회사들이 일률적으로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에게 LTV 80%까지 대출을 해주는 것인지?
- □ LTV 80%는 금융업권 감독규정상의 "최대" 대출한도이며,
 - **금융회사**가 **자체적**으로 건전성 관리를 위해 지역·주택종류별 최대로 허용하는 LTV 비율은 **80%보다 낮을 수 있음**
- □ 다만, 금융회사 자체 LTV가 80%보다 낮을 경우 **모기지보험**을 활용 가능
 - * 대출기관에게 차주의 주담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실을 보상하는 보험상품으로, 현재 서울보증보험(SGI)에서 취급 중
 - **금융회사**는 LTV 확대에 따른 **추가 손실위험을** 모기지보험을 통해 관리 가능하고,
 - **차주**들도 금융회사의 담보인정비율이 낮은 경우, 모기지보험을 통해 **추가 대출이 가능**
 - * 이 경우 모기지 보험료는 금융회사가 부담(다만, 차주에게 전가 가능)

[상환능력 심사 보완방안]

- 5. LTV 정상화에도 불구하고 DSR로 인해 대출이 제약되는 것 아닌지?
- □ LTV 규제 정상화 과정에서 **상환능력 심사제도**(DSR)가 청년 등의 대출을 제약하지 않도록 DSR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
 - ① DSR 산정시 장래소득 반영폭을 확대
 - (i) (기존) 대출시점과 및 만기시점 소득간 단순평균 → (개선) 대출~만기시점까지의 각 연령대별 소득 흐름의 평균
 - (ii) (기존) 만기 최대 20년으로 제한 → (개선) 실제만기 선택 가능

장래소득(근로소득자 한정) 인정산식 개선시 소득증가율(%)

	현	행			가	선		
연령\만기	10~14년	15~19년	20년~	연령 \ 만기	10~14년	15~19년	20년~	30년
20 ~ 24	21.3	31.5	38.1	20 ~ 24	21.6	32.0	40.8	51.6
25 ~ 29	16.7	22.2	23.8	25 ~ 29	16.8	23.6	28.4	31.4
30 ~ 34	11.8	13.2	12.0	30 ~ 34	12.6	16.1	17.7	13.1
35 ~ 39	5.3	4.2	△0.2	35 ~ 39	6.2	6.8	5.3	_



- ② 현재 장래소득 인정에 소극적인 금융회사들이 보다 적극적 으로 장래소득 인정기준을 활용하도록 유도
- ③ 최근의 **대출만기 확대** 추세*도 DSR 제약 완화에 도움되는 측면
 - * 주택담보대출 최장만기 확대(30→40년) 신용대출 분할상환시 DSR 산정만기를 실제만기로 적용(5년→최대 10년)

6. DSR 장래소득 인정을 적용받기 위한 별도의 연령제한이 있는지?

- □ 만기 10년이상 주택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(분할상환)을 받으려는 무주택 근로자* 대상으로 DSR 산출시 장래소득 인정 가능(현행동일)
 - * 무주택자 = 생애최초 주택구매자 + 생애최초 外 주택구매자인 무주택자
- □ DSR 산정시 장래소득을 인정받는 것이 **유리하다**고 판단하는 **차주**의 경우 **선택적으로 활용** 가능
 - ※ 현재 은행은 자율규제(여신심사 선진화모범규준)를 통해 "만기 10년이상 주택구입목적 주담대(분할상환)를 받으려는 무주택 근로자" 대상으로 DSR 장래소득 인정기준을 적용 중
- **공신력 있는 통계자료**(통계청 고용노동통계) 활용시, 20~39세인 차주가 **만기 10년 이상** 대출을 받는 경우, 장래소득을 활용하는 것이 대출한도 확대에 유리
- 이외에도, **개별** 차주가 별도의 객관적 **증빙자료** 제출시 장래 소득 인정 가능(현행과 동일)
 - * (예시) 통계청 고용노동통계상 '관리자' 업종은 20세 월평균 급여 3,250만원, 50세 10,911만원 → 20~50세까지 평균소득 8,103만원, 장래소득 249%확대

7. 차주단위DSR 3단계가 적용되는 시점은?

- □ '22.7.1일(규제시행일) 이후 신규대출 신청분부터 3단계를 적용
 - 7.1일 이전 **금융회사**가 **전산상 등록** 등을 통해 대출 **신청접수를 완료**한 경우 종전의 규정을 적용
 - 신규대출이 아닌 경우(증액없는 만기연장 등) 종전규정 적용
- □ 신규대출 신청이 7.1일 이후 이뤄졌더라도 대출에 필요한 의사 결정이 7.1일 이전에 이미 발생한 경우 종전규정 적용 가능
 - '22.6.30일까지 **주택 등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**하고 **계약금을** 이미 납부한 사실을 증명한 경우
 - '22.6.30일까지 **입주자모집 공고**(입주자모집 공고가 없는 경우 착공 신고, 재건축·재개발 사업장 조합원의 경우 관리처분인가)를 **실시**한 사업장에 대한 **자금대출의 경우 등**
 - * 다만, 기 공고된 사업장의 분양권 등이 '22.7.1일이후 전매된 경우 등은 강화된 규제 적용

[주택금융공사 정책모기지]

- 8. 생애최초 LTV 80% 및 DSR 산정시 장래소득 인정 확대는 보금자리론과 적격대출에도 적용되는지?
- □ 금번 방안은 보금자리론과 적격대출에도 동일하게 적용 예정 ※ 시행시기는 일반 금융기관 주담대와 상이 ('22.11월 예정)
 - 생애최초 LTV 80% 완화는 보금자리론과 적격대출 모두 적용*
 * 주신보 모기지보험(신설) 활용 예정
 - 다만, **DSR 산정시 장래소득 인정 확대**는 **DSR**을 적용하고 있는 **적격대출에만 해당**
 - 보금자리론은 DSR을 적용하지 않고 일반 금융회사에 비해 완화된 수준의 DTI* 적용중
 - * 조정지역 : 50%(실수요자는 60%), 그 외지역 : 60%
- □ 또한, 최장만기 확대(40년 → 50년) 및 체증식 상환방식 활성화*도
 병행하여 상환부담 완화 및 대출한도 확대에 도움되는 측면
 - * (현행) 만 39세 이하 청년층이 10·15·20·30년 만기 이용시 선택 가능
 - → (개선) 40년 만기 이용시에도 선택 가능

- 9. 50년 만기 정책모기지는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것인지?
- ① 정책모기지 이용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**보금자리론·적격대출** 지원대상에 해당되어야 함
 - < 보금자리론·적격대출 지원대상('22.6월 기준) >

	보금자리론	적격대출	
소득	7천만원 이하	제한없음	
	* 신혼여부·자녀수에 따라, 최대 1억원		
ᄌ테스	무주택자, 처분조건부* 1주택자	무주택자, 처분조건부* 1주택자	
주택수	* 투기·투과지역 1년, 그 외 지역 2년 이내	* 투가투과지역 6개월 그 외지역 2년 이내	
주택가격	시가 6억원 이하 시가 9억원 이하		
주택규모	제한없음		

- ② 50년 만기 정책모기지는 40년 만기와 마찬가지로 별도의 연령 제한 적용 예정
 - 초장기 모기지는 상환부담 경감 뿐 아니라, **소득흐름**과 **상환 능력에 부합**하는 **주거사다리 지원**을 위해 도입되는 것으로,
 - 소득 발생기간이 긴 **청년층으로 이용 대상**을 한정하여 운영 하는 것이 바람직
 - 현재 10년·15년·20년·30년 만기는 연령 제한이 없으며,
 - 40년 만기는 만 39세 이하 또는 7년 이내 신혼부부
 - <u>50년 만기는 만 34세 이하 또는 7년 이내 신혼부부로 한정</u> 되어 운영할 예정
 - < 보금자리론·적격대출 만기('22.6월 기준) >

만기	10년·15년·20년·30년	40년	50년(신규)
이용대상	제한없음	만 39세 이하 또는 7년 이내 신혼부부	

※ 50년 만기 정책모기지 선택시 **개인의 상환능력**, 금리부담(만기가 길수록 전체 금리부담이 커짐)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

[안심전환대출]

10. 안심전환대출을 이용한 대환은 언제부터 이루어는지?

- □ 금번 안심전환대출은 접수 혼란과 심사 지연 최소화를 위해 **주택 가격 구간**을 나누어 낮은 가격부터 순차적으로 접수·심사 진행
- □ 9월 중순부터 10월 초에 걸쳐 순차적인 접수가 진행되고, 접수 시점부터 최소 60일 이상의 심사기간이 소요되므로,
 - 예정대로라면, 11월 중·하순부터 대환이 시작될 예정
 - 모든 신청건에 대해 **연내 대출 실행을 완료**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
- ※ 단, 신청자 집중 및 이용요건 증빙 장기화 등으로 인해 심사기간 추가 소요 가능
- □ 적용 금리는 **접수 순서와 무관**하게, 시행 시점 보금자리론 금리^{*} 에서 **30bp 할인한 단일 금리**를 동일하게 적용할 예정
 - * '22.6월 적용 보금자리론 금리 : 4.35 ~ 4.60% (만기별 상이)
 - ※ 지원의 형평성과 신속심사를 위해 추가 우대금리는 운영하지 않음